

● 제26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5. 6. 3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546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2015. 6.12
- 다. 회부일: 2015. 6.17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929만원으로, 이 중 3,633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3,371만원을 징수하였음. 미징수액은 변상금 26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2.8%(전년도 100%)임.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39.3	36.3	33.7	2.6	92.8
세외수입	39.3	36.3	33.7	2.6	92.8
경상적세외수입	28	23.5	23.5	-	100
사용료수입	1.1	0.9	0.9	-	100
기타사용료	1.1	0.9	0.9	-	100
수수료수입	9.4	6.1	6.1	-	1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9.4	6.1	6.1	-	100
사업수입	17.5	16.5	16.5	-	100
기타사업수입	17.5	16.5	16.5	-	100
임시적세외수입	11.3	12.9	10.3	2.6	79.8
기타수입	11.3	12.9	10.3	2.6	79.8
변상금및위약금	11.3	10	7.4	2.6	74.0
그외수입	-	2.9	2.9	-	100

2. 세출결산

가. 예산총괄

-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15억 2천 6백만원이며, 186억 5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9억 2천 1백만원(불용률 13.6%)을 남김.
- 불용사유별로는 예산집행 잔액 6억 1천만원, 예산절감 9천 4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1천 7백만원임.

〈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21,526	18,605	-	2,921	13.6
사업예산 계	19,680	16,970	-	2,710	13.8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12,064	11,378	-	686	5.7
의회운영사업	10,039	9,408	-	631	6.3
의회청사 환경개선	2,025	1,969	-	55	2.7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	3,589	3,236	-	353	9.8
정보화 사업	622	591	-	31	5.0
의정활동 홍보 사업	2,968	2,645	-	323	10.9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4,027	2,356	-	1,671	41.5
국내·외 교류사업	656	591	-	65	9.9
입법활동지원사업	3,267	1,676	-	1,591	48.7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103	88	-	15	14.6
일반예산 계	1,846	1,635	-	211	11.4
행정운영경비	1,846	1,635	-	211	11.4

나. 예산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 3천 9백만원으로 제9대 중증장애 의원(4명)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고자 ‘의회청사방호관리’와 ‘의회운영지원’에서 의회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조치하였음.

〈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건		565	39	39	
의회 청사방호 및 청 소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412	22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보수부족
의 회 운 영 지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	22	
의 회 운 영 지 원	사 무 관 리 비 (201-01)	131	17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보수부족
의 회 운 영 지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22	-	17	

다. 예산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2건, 1천 7백만원으로 국제자매도시(5개국) 의회홍보책자 추가 제작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천 2백만원과 제9대 지방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법규집 추가 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 5백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예산 변경사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과목		예산액	변경사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건		1,127	17	17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201-01)	936	12	-	서울시의회가 교류하는 국가중 중국, 일본을 제외한 5개 국가 홍보책자 추가제작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201-01)	50	-	12	
의회법·지방의회법 개정안	사무관리비 (201-01)	76	5	-	'14년에 제정 및 개정된 법규내용 수록을 위한 법규집 발간 예산 부족
의회책기 의정사항 보고서 발간	사무관리비 (201-01)	65	-	5	

라. 예산이용·이체·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액 : 해당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4년도말 의회사무처 소관 관리 공유재산은

- 토지 3,637.7 m^2 , 802억 6백만원이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44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고,

- 건물 14,858 m^2 , 42억 3천 6백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대장가액 증가는 없음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결산 검토

-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현액은 3,927만원으로 이 중 3,63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72만원을 징수(수납률 92.8%)한 바, 미징수액은 변상금 261만원임.

가. 정밀한 세입예산 편성 및 운용 미흡

-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1〉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차이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률
변상금*	11,330	7,360	65.0%	-	-	-	-	-	-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1,050	882	84.0%	1,082	860	79.5%	923	893	96.7%

- 변상금은 제8대 임기종료 의원 중 의정활동 지원용으로 지급된 노트북·태블릿PC 분실 및 훼손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결정에 따른 것으로 1,133만원의 세입예산 중 736만원을 실제수납하였음.(총 18건, 징수율 65.0%)
 - 변상금 부과 및 과다 미수납은 의회 교체기(8대→9대)를 앞두고 임기종료 의원에 대한 노트북과 태블릿PC 반납 안내 등 관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된 경우(6건)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세입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는 예산편성시 (주)우리은행으로부터의 실질사용료 수입분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대상이 아닌 화재보험료와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세입추계 오류를 한 바, 이로 인하여 회계상 미수납분이 발생하였음.
- 이처럼 면밀한 세입내용에 대한 분석 없이 전례답습적인 세수추계에 따른 오류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분석과 편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재활용품 판매 세입처리 미흡

-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징수결정액 94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609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

〈표- 2〉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9,399	6,092	64.8%	11,000	7,964	72.4%	-	8,642	-

- 또한 세입조치 대상 재활용품 발생분 중 일부가 다음 연도에 세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 전년도 11월과 12월 재활용품 발생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다음 연도 1월 또는 2월에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연도 재활용품 발생분에 대한 세입수납 결과와 정산 작업을 회계연도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관리가 필요함.

- 한편 최근 3년간 재활용품수거 판매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12년 8,642천원→'13년 7,964천원→'14년 6,092천원)를 보이고 있는 바, 의회사무처는 자원 절약에 따른 비용절감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재활용품 발생 자료를 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원 절약을 감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또한 재활용품 배출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고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이는 바, 재활용품수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자원낭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표- 3〉 최근 3년간 재활용품 발생 총량에 대한 통계

연도별	중량(KG)	금액(원)	비 고
2013년	50,240	7,964,450	*2012.11~12월분 포함
2014년	63,850	6,092,200	
2015년 6월	55,120	4,598,600	*2014.11~12월분 포함

가. 총괄검토

-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총액은 215억 2천 6백만원이고, 이 중 186억 5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9억 2천 1백만원(불용률 13.6%)에 이르고 있음.

1) 행정편의적 예산변경제도 활용 지양

- 의회사무처는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사업’과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 변경사용: 동일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용통하여 사용함.

〈표- 5〉 예산 변경사용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의정 담당관	서울시의회 소식지발행	사무관리비	936,299	12,000		924,299	2014.09.19	국제자매도시(5개국) 국가홍보책자 추가 제작
	의회안내 홍보책자제작		50,000		12,000	62,000		
	의회입법,법률 고문 운영		76,330	4,956		71,374	2014.12.19	'14년도 제 개정된 법규내용 수록한 법규집 발간 부족예산 반영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64,800		4,956	69,756		

- 변경사용은 세출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예산편성의 오류를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의회안내 홍보책자제작사업’과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사업’은 규모와 시기,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예산변경제도를 사용해야 할 만큼 예측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므로 사업 계획에 대한 정확한 필요예산 분석과 편성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예산변경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임.

2) 예산의 변경사용 후 불용조치 지양

- 예산변경한 사업 중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 변경사용 사업 중 불용률 10% 이상 사업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변경사용후 예산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936,299	△12,000	924,299	673,390	250,908 (27.1%)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사무관리비	76,330	△4,956	71,374	44,369	27,005 (37.8%)
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사무관리비	64,800	4,956	69,756	62,174	7,582 (10.9%)

- 예산집행의 융통성과 신축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예산의 변경사용의 경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변경 전에 치밀한 사전 수요예측 및 효율적 예산운용이 필요함.
- 또한 변경사용으로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3) 예산불용사업 평가 및 검토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 3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예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71,374	27,005 (37.8%)	· 당초 20명 고문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15명 운영함.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	1,620,000	1,500,743 (92.7%)	·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법령개정 준비 등으로 사업 변경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 살림 토론회 등 개최	27,000	9,325 (34.5%)	· 2014년 지방선거 여파로 결산위원 의원 면직에 의한 토론회 미개최

- 상기 사업의 불용사유를 감안할 때 대부분 수요예측 오류와 제도적 미비점에 기인한 바, 이는 역설적으로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면 한정된 자원 여건 속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하며,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산변경제도를 활용하는 등 철저한 사업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4)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의회 심의 필요

- 전용 및 변경사용 등 예산변경제도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예산 운용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형식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2014회계연도의 경우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56회 임시회(9.16~9.30)에 제출되었으므로 예산변경 대상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의회와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음.
- 그러나 입법담당관실의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과다 불용액(15억원)과 불용사유를 보면, 그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집행잔액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막고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바, 동 사업을 그대로 둔 것은 예산활용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 배분을 저해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편의적 예산변경이 반복적·관행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에 대한 엄정한 중간 점검과 정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의정활동수행비 집행잔액 활용 불철저

- 의정활동수행비는 의원의 법정 의정비를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구성됨.
- 2014년도 예산액 90억 8천2백만원 중 84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5억 8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전년대비 불용률도 4.3% 포인트 증가(2.2% →6.5%)하였음.
- 그 사유를 보면 제8대 의회 임기만료전 사직한 의원(12명)과 교육의원제도 일몰제로 인한 의원정수 감소(8명)로 인한 집행잔액임.

〈표- 7〉 최근 3년간 의정활동수행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변경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	증			
2014	9,082,067	-	-	-	9,082,067	8,493,625	588,442 (6.5%)
2013	9,073,374	-	-	-	9,073,374	8,871,519	201,855 (2.2%)
2012	8,654,603	-	42,692	-	8,611,911	8,497,140	114,771 (1.3%)

- 임기교체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평년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정적 운용이 미흡했다고 하겠음.
- 향후 각 사업의 불용액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또는 예산변경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됨.

2)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사업의 반복적 불용액 발생

- 의회 소식지는 주요 의정활동과 유익한 시정정보를 담아 배부함으로써 대시민 친밀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4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9억3천7백만원의 26.8%인 2억5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인쇄계약 낙찰차액과 외부기관 원고료 집행잔액임
 - 특히 2014년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의정활동 축소로 인하여 소식지의 계약면수를 50% 내외 분량으로 축소 발행함으로써 감(減)원인 행위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의 불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낙찰차액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업계획 입안부터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표- 8〉 최근 3년간 의회 소식지 발행사업 집행잔액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변경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	증			
2014	948,899	-	12,000	-	936,899	685,660	251,239 (26.8%)
2013	926,547	-	-	-	926,547	730,629	195,918 (21.1%)
2012	830,685	-	-	-	835,680	763,751	66,934 (8.0%)

-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의회 소식지 분량을 축소 발행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며 의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사업은 의회가 승인한 내용대로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3)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계획 수립 철저

- 이 사업은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선진도시 비교 시찰 등을 통해 대외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외자매도시 의회방문,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국제회의 등 행사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 4억 7천 2백만원 중 11.6%인 5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감소분에 따른 것임.

※ 매년 평균 4~5개 상임위가 해외 비교 시찰하였으나, 2014년도의 경우 3개 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 교통위, 교육위)가 실시함.

〈표- 9〉 최근 3년간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변경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	증			
2014	471,600	-	-	-	471,600	417,033	54,567 (11.6%)
2013	449,990	-	-	3,600	453,590	422,910	30,680 (6.8%)
2012	374,490	-	12,643	-	361,847	360,421	1,426 (0.4%)

- 최근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및 우호친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인권문제, 도시민 거주문제 등 세계 공통의 현안을 국제도시 간 상호협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을 연도말 과다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의정 지원을 통해 최대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해외 자매도시 의회방문,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외국정부 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정식 초청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외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임.

4) 공청회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전면 재검토 필요

-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에 취지가 있음.
- 2014년도 예산현액은 4천 1백만원(사무관리비 2천 7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 4백만원)으로 이 중 3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청회 개최 지원 요청이 없어 공청회 행사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하였음.

〈표- 10〉 최근 3년간 공청회 개최 사업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변경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	증			
2014	41,000	-	-	-	41,000	36,071	4,929 (12.0%)
2013	61,200	-	-	-	61,200	44,352	16,848 (27.5%)
2012	63,000	-	15,400	-	47,600	27,550	20,050 (42.1%)

-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 제54조와 제59조에 두고 있으며,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른 공청회가 아니라 내부 방침을 통해 정책 토론회에도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 바, 다양한 유형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위원회와 의원의 수요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예산집행은 예산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참고자료 참조)

〈표- 11〉 최근 3년간 공청회 지원 집행실적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비고
계	8건	10건	9건	
정책토론회(방침)	6건	10건	9건	
공청회(위원회 의결*)	2건	0건	0건	

※ 위원회 의결은 「회의규칙」 제54조와 제5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건수임.

- 지난 제257회 정례회 '2015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적극 수용 답변이 있었음.
- 현재와 같이 「회의규칙」이 정한 법정 공청회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 토론회를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례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될 경우 사전 토론회 실시를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규칙」에 따른 공청회를 생략하고 있는 관례를 감안할 때, 예산안심의시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공청회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이 다양한 형태의 공개 시민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토론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방식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5) 서울살림토론회 사업 계획 및 집행 철저

- 이 사업은 시민단체·외부전문가·의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 및 결산토론회를 통해 예산심사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
- 이 사업의 불용률은 전년대비 31.9% 포인트 증가한 34.5%인 바, 그 불용 사유를 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2013회계연도 결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임.

〈표- 12〉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변경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	증			
2014	27,000	-	-	-	27,000	17,675	9,325 (34.5%)
2013	28,600	-	-	-	28,600	27,862	738 (2.6%)
2012	25,200	-	-	-	25,200	18,101	7,099 (28.2%)

- 그러나 이 사업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14.6.4.) 이후에 매년 개최된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결산토론회를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은 아니었음.
- 또한, 결산토론회의 취지가 서울시 결산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있다는 점과 사업의 계속성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불용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1) 현재 공청회 관계 예산(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은 입법담당관에 일괄편성되어 있고, 실제 업무수행은 위원회에서 담당하면서 입법담당관으로부터 소요 예산(사무관리비)을 교부받는 상황이므로, 사무와 예산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위원회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앞으로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예산사업 집행은 지양되어야 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위원회의 심사)

-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 ② 토론은 질의 종결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 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⑥ 제5항의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제59조(공청회)

-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2. 제정·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내역

□ 2014년 : 총 8건

연번	공청회명	개최일시	관련조례(안)	주관
1	명수학교 정상화 개혁방안 관련 토론회	‘14. 2. 7	서울특별시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위원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안 공청회	‘14.10.2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교육 위원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 제정 공청회	‘14.10.30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	교육 위원회
4	서울특별시 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	‘14.11.3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운영 위원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5	옥상녹화와 태양열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14.11. 3	신재생에너지설치촉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수자원 위원회
6	서울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공청회	‘14.11. 7	서울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조례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7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안 공청회	‘14.11.10	서울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기획경제 위원회
8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정비를 위한 공청회	‘14.12. 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기획경제 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 제정안은 회의규칙에 따른 공청회임.

□ 2013년 : 총 10건

연번	공청회명	개최일시	관련조례(안)	주관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안) 공청회	'13. 4.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행정자치 위원회
2	준주택(고시원 등) 입지실태 및 관리개선방안 토론회	'13. 4.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 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 례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3	서울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13. 6. 5	서울시 복지 및 건강 격 차 해소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 위원회
4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청회	'13. 7.10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 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환경수자원 위원회
5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 정 관련 토론회	'13. 8.26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교육 위원회
6	국제중학교 관련 시민토론회	'13.11. 6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 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 위원회
7	강서구 양천구 교육발전을 위한 구민대토론회	'13.11.18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 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 위원회
8	서울시의원 공약실천제도 정착을위한토론회	'13.11.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 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운영 위원회
9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13.11.29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 원단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보건복지 위원회
10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시민 토론회	'13.12. 2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 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보건복지 위원회

□ 2012년 : 총 9건

연번	공청회명	개최일시	관련조례(안)	주관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	'12.3.1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정책연구위원회
2	서울시 노숙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12.6.13	서울시 노숙인 복지지원 조례	보건복지위원회
3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	'12.9.4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책연구위원회
4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12.9.25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도시관리위원회
5	「지방자치제도 개선」 토론회 -법제도를 중심으로-	'12.10.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정책연구위원회
6	서울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한양도성 순성 공청회	'12.10.29	서울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 공청회	'12.11.16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
8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발전지원센터」 설치방안 공청회	'12.11.21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책연구위원회
9	남은음식물 쓰레기 자원 선순환 공청회	'12.11.28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도시관리위원회